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793 2012년 7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6월 7일, 한명희·김태희 의원(찬성자 9명)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7일

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

2012년 6월 27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한명희 의원)

가. 제안 이유

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민주시민의식 고양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○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-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정함(안 제3조).
-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사항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박용훈)

- 본 제정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임.
- 민주화운동의 범위 및 대상은 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바, 제정안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국한하고 있음.

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

제2조(민주화운동)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.

- 1. 2·28대구민주화운동, 3·15의거, **4·19혁명**, 6·3한일회담 반대운동, 3선개헌 반대운동, 유신헌법 반대운동, 부·마항쟁, 광주민주화운동 및 **6·10항쟁**
- 2.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민주화운동(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·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)
- 3.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
- 주요내용을 보면,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, 정리·계승사업, 교육사업, 전시·출판·학술 및 문화사업을 위한 기념사업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, 필요할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민주화운동이 역사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입법의 취지와 의의는 크다고 할 것임.
- 다만, 16개 광역시·도의 관련 조례현황을 보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등 총 4개 자치단체에서 민주화 운동 기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·시행 중에 있으며, 전라남도 1억 5천 5백만원, 대구광역시 2천 8백만원, 경상남도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.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.
- 6. 토 론 요 지: 없 음.
- **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**(재석위원 7명, 전원찬성).
- 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(한명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793

발의년월일 : 2012년 6월 7일

발 의 자 : 한명희·김태희 의원(2명)

찬 성 자: 9명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민주시민의식 고양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규정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정함(안 제3조)
- 다.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사항 없음

다. 기 타:

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민주화운동"이란 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」제2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서울특별시에서 발 생한 4·19혁명, 6·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 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·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.
- 제3조(기념사업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
 - 2.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
 - 3.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
 - 4.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·출판·학술 및 문화사업
- 제4조(위탁)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부 칙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